

대한민국 - 2013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요약본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정부는 전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었다. 6 월 3 일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 NHCHR)은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2.5 퍼센트가 한국 국적자라고 발표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봉사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종교단체의 지도자들 및 관계자들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안들을 협의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4 천 9 백만 명으로 추정된다(2013 년 7 월 추정치). 최근에 실시된 인구 센서스 자료(2005 년)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대략적으로 불교 23%, 개신교 18%, 가톨릭 11%로 조사됐으며 47%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순진리회, 통일교,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는 모두 합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다. 또한, 거의 전원이 주한 외국인으로 이뤄진 소수의 유대인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REPUBLIC OF KOREA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떠한 종교에게도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20~30 세 사이에 속하는 사실상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복무기간은 병과(兵科)에 따라 21~24 개월이다. 법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반자는 최고 3 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8 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및 예비군 복무 의무가 면제되며 추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비군 복무 의무는 8 년 동안 계속되며 1 년에 몇 차례 훈련을 받는다. 벌금은 관할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초 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만원(\$190) 선이다. 고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벌금이 10 만원~30 만원(\$95-284)씩 증가한다. 법률은 위반자를 200 만원(\$1,895)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보존법에 따라 불교 사찰 등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교부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종교단체나 외국인 종교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 관행

REPUBLIC OF KOREA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거나 구금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법원은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8 개월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더 이상 추가로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의 보고에 의하면, 7 월 31 일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자 583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105 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37 명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체 건수는 2012 년 말(733 건)보다는 적었지만 2009 년(400~500 건)보다는 많았다.

6 월 13 일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 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7 월 10 일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18 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 월 26 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 명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며 수감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UNHCHR 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9 월 6 일에 울산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1 월을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신청한 사건 28 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태였다.

워치타워인터내셔널 소식통은 1990 년 이후 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20 여명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950 년 이래로 한국에서 17,400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PUBLIC OF KOREA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종파를 초월한 총괄기구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에 의하면, 5월에 서울의 한 모스크에서 기물파손, 협박전화, 이슬람 규탄 집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 내 이슬람 신자들은 가혹행위, 이슬람식 식단의 부재, 고용주가 근무 중에 기도를 불허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사적으로, 혹은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종교단체의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의 자유에 대해 협의했다. 대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했다.